

■ 최신 법령 ■

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예술인 등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법인인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를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기능대학 설립의 타당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\(2019. 4. 23. 시행\)](#)